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 운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외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어떤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9권 107폐지)

현시기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대외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외 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외국투자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 하게 되는 국제투자분쟁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구제원칙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 를 가져야 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이란 국제투자분쟁을 현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적원칙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외국투자가들이 자기의 상품이나 봉사, 자본을 들이민 나라에서 발생한 분쟁을 현지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현지국가의 국내법에 준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분쟁해결원칙이다. 현지에서 해결한다는 의미에는 법률적구제조치와 행정적구제조치가 포함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법률적구제조치는 자본수입국 재판소의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조치이며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행정적구제조치는 자본수입국 정부나 해당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한 구제조치이다. 많은 경우 자본수입국 정부와 외국기업사이의 분쟁은 자본수입국 정부나 해당 국가기관의 신소처리 또는 행정적절차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있으며 외국기업과 자본수입국 기업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있다.

자본수입국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당사자들 역시 자본수입국에 분쟁해결을 위한 구제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국제투자분쟁을 제3국에서의 국제중재나 민사소송 또는 외교적보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반면에 대다수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국제투자분쟁이 국제적관할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고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리론적기초는 19세기 후반기에 출현한 칼보주의이다. 이 리론은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자본수입국에 있다는 외교정책리론이다. 즉 현지에서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하기 전에 외교적보호나 간섭을 금지할것을 목적으로하며 외국투자가본국의 재판소보다 현지재판소를 리용할것을 요구한다. 이 리론은 1860년 대에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유명한 국제법학자였던 카를로스 칼보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자국공민에 대한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요구해나선 유럽렬강들의 부당한 간섭은 라틴 아메리카지역 나라들의 격분을 자아냈으며 나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바로 칼보주의가 출현하게 되였던것이다.

이 리론은 주권국가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하기때문에 다른 나라의 무력적 또는 외교적인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며 외국인들은 투자를 비롯한 국제경제분쟁에 대하 여 오직 현지의 재판기관을 통하여서만 해결방도를 모색하여야 하며 현지공민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칼보주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투자가본국 정부의 외교적보호권뿐아니라 제3국에서의 중재나 재판소송도 반대하고있다. 이러한 주장의 리론적근거는 국내외 공민들에 대한 대우가 평등하기때문에 외국인의 청구가 국제적인 청구로 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인에대한 대우는 치외법권적인 《국제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공민에 대한 대우와 꼭같아야 한다는것이다.

칼보주의는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서 투자가본국의 외교적보호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현지구제원칙은 국제투자분쟁을 자본수입국에서의 모든 법률적구제수단들과 함께 행정적절차들을 모두 리용하여 현지에서 해결할것을 요구하며 외교적보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현지구제원칙에 따라 자본수입국령역안에서 모든 법률적수단들과 행정적절차에 의거하여서도 자본수입국에서 발생한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제3국에서의 국제중재에 의거하거나 본국의 외교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그 적용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에는 무엇보다먼저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할수 있는 국제법적근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국공민에 대한 외교적보호권을 구실로 현지구제 원칙을 부정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외교적간섭을 정당화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을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적근거들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적근거에는 우선 내 정불간섭원칙이 있다.

내정불간섭원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부문제에 간섭 하지 않을데 대한 국제법상원칙이다.

국가는 자기의 모든 대내문제와 대외적문제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서로 상대방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서 호상관계를 맺고 유지하여야 한다. 내정불간섭원칙의 기본요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일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것이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렬강들이 자국민보호를 구실로 외교적으로 간섭하다가 침략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한 실례들은 현지구제원칙이야말로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내정불간섭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적근거에는 또한 국가의 속지관할원칙이 있다.

속지관할원칙은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의 령역전반에 대하여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므로 그 령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률적문제들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할수 있

다는 국제법원칙이다. 국제직접투자관계의 특성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속지관할 원칙이 보다 적합하다고 말할수 있다. 국제직접투자관계의 당사자로 되는 외국투자가는 자기의 자본을 자본수입국에 투자하여 해당 나라의 령역안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한다. 해 당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관계는 자본수입국의 령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외국투자가들은 자본수입국의 관할권에 우선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적근거에는 또한 자연부원에 대한 국가의 영구주권원칙이 있다.

자연부원에 대한 국가의 영구주권원칙은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의 령역안에 있는 모든 자연부원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국제법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자본수입국들은 자기 나라의 령역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 원칙은 현대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 로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자본수입국의 관할권행사에 유력한 법적근거를 제공해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에는 다음으로 현지구제원칙적용에서의 필수적조건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지구제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외국투자가가 현지구제조치를 리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절차를 끝까지 다 리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는 자본수입국의 수속법상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해당 나라의 최고재판기관이나 최고주권기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의 모든 상소수단들을 가능한껏 다 리용하여야 한다. 만일 외국투자가가 일방적으로 본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줄것을 청구하는 경우 자본수입국은 현지구제원칙의 위반을 근거로 외국투자가본국의 외교보호를 거부할수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가로서는 본국에 외교보호를 요청하지 말고 상소에 이르기까지 자본수입국령역안에서의 모든 법적수단들을 충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에는 다음으로 현지구제원칙적용에서의 례외문제가 있다.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례외적인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것은 외국투자가가 현지구 제조치가 필요없다는것을 근거로 직접 본국에 외교적보호를 취해줄것을 제기하거나 국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례외와 관련하여 각이한 주장들이 있다.

하나는 자본수입국에서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소송상절차가 분쟁해결의 공 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구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법을 《국제적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나라마다 재판소송절차가 각이하기때문에 사실상 한 나라 또는 발전된 자 본주의나라들의 소송절차를 보편적인 국제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것은 국가자주권 존중원칙에 심히 위반되는것으로서 인정될수 없다.

다른 하나는 자본수입국에서 이미 처리된 류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사례로부터 해당 나라에서의 분쟁해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구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것으로서 개별적분쟁문

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것이다. 국제투자분쟁들은 다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있으며 매개 나라의 국가정책이나 법들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완전히 똑같은 분쟁사건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구제원칙으로 해결되지 못한 지난 시기의 특정한 실례를 가지고 현재 해결해야 할 분쟁해결에 현지구제원칙을 적용할수 없다는것은 헌실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외국투자가의 리권에 대한 자본수입국의 침해가 투자가의 본국에 대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독자적인 청구를 할수 없기때문에 현지구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리론적기초는 자본수입국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주권의 일부를 자본수출국이 가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회사의 주권을 일부 가지고있는것은 회사의 한개 주주로서 회사를 통하여 경제적리익을 얻기 위한데 있을뿐이다. 때문에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수입국의 법적 및 행정적조치가 곧 자본수출국에 대한 침해행위로 될수는 없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의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에는 다음으로 현지구제원칙의 포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

자본수입국자체가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현지구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구제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자본수입국 정부가 외국투자가와의 투자계약이나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정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포기는 쌍방투자조약과 같은 국제 투자와 관련한 조약이나 외국투자가와의 투자계약에 포함되여야 한다.

현지구제원칙의 포기와 관련하여 자본수입국정부가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고 일정하게 암시한 경우 현지구제원칙의 포기로 인정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례로 자본수입국이 외국투자가의 본국과 체결한 쌍방투자조약에서 국제투자분쟁을 중재에 제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현지구제원칙의 적용을 포기한것으로 인정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들수 있다.

오늘날 자본수입국이 외국투자가와 체결한 국제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다음 제3국에서의 중재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리고 현지구제에 대하여 아무리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수입국이 현지구제원칙을 묵시적으로 포기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현시기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국제조약인 1965년 《국가와 다른 국가 공민사이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제26조)에는 분쟁쌍방이 별도로 규정한것이 없고 협약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기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다른 모든 해결방법을 배제한것으로 보고 분쟁문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쎈터의 중재에 제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문의 《다른 모든 해결방법》에는 외국투자가의 본국에 의한 외교보호조치나 외국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소송뿐아니라 현지구제도 다 포함된다. 그러나 중재의 방법으로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사자들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므로중재합의가 없는 한 현지구제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에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 권을 철저히 고수하는데 필요한 국제법리론들을 잘 알고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 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